

## 2026년도 제1회 고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정책지원관, 영상촬영]

2026년도 제1회 고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영상촬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8일

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 I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 시간	담당업무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	행 정 7 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 40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li> <li>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li> <li>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li> <li>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li> </ol>
영상촬영 (의정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1년	주 35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정홍보영상 기획, 촬영, 편집</li> <li>2. 의회 SNS 관리</li> <li>3. 의장 및 의원 영상 축사</li> <li>4. 의정활동 영상 기록물 관리, 보존</li> <li>5.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송 및 운영</li> <li>6. 의회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관리</li> </ol>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계약 가능**

※ 임용일은 2026. 6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및 재공고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Ⅱ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45조, 제48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Ⅲ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직무분야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정책지원관 (행정7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관련분야 실무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소, 대학교, 기업에서 입법, 행정, 법무, 예산·결산·회계, 감사·조사, 연구·분석, 문화·관광, 복지, 농수산, 산림, 보건, 환경, 의원보좌 관련 업무
영상촬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필수자격(모두 충족 필수)] ①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능숙한 사람 ② 주말·공휴일 및 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관련분야 실무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업에서 홍보영상물의 기획·구성, 촬영, 편집분야 실무경력

※ 참고(유의) 사항

- 1)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정책지원관)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단,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10년, 중증장애인은 5년
  - (영상촬영)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명시가 어려울 경우, 내부공문 및 사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근로약정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책임소재가 명확한 업무수행 경력을 인정하며, 단순 보조업무(인턴 및 사무보조·행정보조·연구보조 등) 수행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독자적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상에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20시간 근무),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4)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cleaneye.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IV 보수 및 복무

### □ 보수 및 근무 조건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임 용 분 야	임용직급	근무부서	근 무 시 간	기본연봉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상임위원회	주40시간	50,272천원
영상촬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의정담당관	주35시간	38,759천원

- 성과연봉: 매년 정기평가를 진행,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가입 가능)

### □ 복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
- 근무기간: 임용일부터 1년(예정)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사업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V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임용 공고 [붙임 파일]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공고 : 2026년 5월 8일(금)
- 접수기간 : 2026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3일간>
- 접수장소 :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불가
  - ① 방문접수(대리 가능, 응시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 전 고양시청 신관 1층(민원여권과)에서 해당직급 증지(정책지원관 7천원/영상촬영 5천원)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고양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② 등기우편 접수
    - 주소: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신관 지하1층  
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 인사담당자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동봉 발송(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전화(031-8075-3878(3879))로 접수 여부 확인)
    -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정책지원관 7천원/영상촬영 5천원) 비용만큼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동봉
      - ※ 받을 분 기재 금지,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제출 불가, 금융업무 마감시간 유의**
    - 봉투 겉면에 '고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 시험일정

시험공고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장소	합격자발표
2026. 5. 8(금)	2026. 5. 20.(수) ~ 5. 22.(금) <3일간>	서류전형	-	2026. 5. 29.(금) 전·후
		인성검사	2026. 6. 2.(화) 개별 메일주소로 링크 전송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면접시험	2026. 6. 5.(금) 전·후 <장소 미정>	2026. 6. 11.(목)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방법

### ○ 1차 시험(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 **개인별 PC를 통해 인성검사 별도 실시**

###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
- 평가기준: 아래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평가방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결정: 고양시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게시

##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 VI 제출 서류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집게 등을 사용하여 연번 순서대로 1개로 묶어서 제출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고양시청 신관1층 <민원여권과>에서 고양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응시원서에 부착(응시수수료: 정책지원관 7,000원/영상촬영 5,000원)
- (등기우편접수)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정책지원관 7,000원/영상촬영 5,000원) 구입 후 동봉 발송(정부 수입인지 불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통상환증서)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개를 첨부하여 제출

### ③ 이력서 1부 [별지3호 서식]

- 증빙자료(경력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인성검사 실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별지6호 서식]**
-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7호 서식]**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 회사 자체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내부공문 및 사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근로약정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전체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http://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⑩ **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 [별지8호 서식]**
-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9호 서식]**
- ⑫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⑬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비동의자에 한함)
- ⑭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수상실적 등]** (해당자에 한함)
  - 사본 제출 가능
- ⑮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별지10호 서식]**

##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부득이한 경우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행본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

## VII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지원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되고, 입증자료 중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함(방문 수령만 가능)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바.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아. 응시서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보안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차.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타.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www.goyangcouncil.go.kr)에 공고합니다.
- 파. 임용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031-8075-387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